

공개용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0-4호)

2021. 9. 16.

무 역 위 원 회

무역위원회 의결서

2021.9.16.

의결 제2021-11호

조사번호: 구제 23-2020-4호

안건명: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최종판정

요청인: 1. 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코오롱 원앤온리타워

2. 에스케이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타워 B동

3. 효성화학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4. 주식회사화승케미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87-21

5. 도레이첨단소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0길 7 한국도레이알앤디센터

피요청인: <대만>

1.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이하 “신콩”)

대만 타이베이시 2 지구, 123호, 8층

(8F, No. 123, Section 2, Nanjing East Road, Taipei City, Taiwan)

2. 그 밖의 공급자

<태국>

1.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이하 “에이제이피”)

태국 방콕 방쿤티엔 사마에담 타캄 로드 95

(95 Thakarm Rd., Samaedam, Bangkhuntien, Bangkok 10150 Thailand)

2. 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이하 “폴리플렉스”)

태국 방콕 와타나 디스트릭트, 수쿰빗 로드 19, 오션 타워 II 18층

(18F, 75/26 Ocean Tower II Soi Sukhumvit 19, Wattana Dist

Bangkok, 10110 Thailand)

3. 그 밖의 공급자

<UAE>

1. Flex Middle East FZE(이하 “플렉스”)

UAE 두바이 제벨 알리 프리존 스트리트 205 플렉스 빌딩
(Flex Middle East FZE Building, Street 205, Jebel Ali Free Zone,
Plot MO 0728, 17930 Dubai, United Arab Emirates)

2. JBF RAK LLC(이하 “제이비에프”)

UAE 라스 알 카이마 사서함 6574
(PO BOX 6574, Ras Al Khaimah, United Arab Emirates)

3. 그 밖의 공급자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관세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령 제680호(2018.4.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2.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연장하여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대만>

- 신공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49%
- 그 밖의 공급자: 5.49%

<태국>

-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1%
- 폴리플렉스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9%
- 그 밖의 공급자: 3.68%

<UAE>

- 플렉스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 제이비에프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95%
- 그 밖의 공급자: 51.48%

이 유

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회사, 에스케이씨주식회사, 효성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식회사(이하 “요청인”)가 2020.10.28.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1차) 건(재심사개시: 2020.12.24.)에 대하여 그 동안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요청인, 공급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 조사와 현장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최종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¹⁾와 관세법 제56조제1항²⁾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³⁾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
- 1)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 모든 확정 덤핑방지관세는 ……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 관세법 제56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 이해관계인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호)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주문과 같이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연장하여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한다.

I. 배경

요청인은 2020.10.28.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종료재심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20.12.1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 건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개시를 결정하고 2020.12.24.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그 동안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해 위원회 원심 판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조치 결정에 따라 2018.4.30.부터 2021.4.29.까지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동 관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4)에 따라서 재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요청인에게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원심 조사 당시 조사대상공급자였던 대만의 신콩, 태국의 에이제이피, 폴리플렉스, UAE의 플렉스, 제이비에프 등 총 5개사를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이하 “피요청인”)로 선정하여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주)크라운화학, (주)폴리켄인더스트리 등 57개 재심사대상물품 수입자와 (주)두리필름판매 등 5개 국내 수요자에게도 질의서를 발송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1.6.17. 본 건 재심사의 요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건 재심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최종판정 전에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수정된 중간보고서 공개본을 2021.8.31.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또한 조사실은 2021.8.25. 덤핑률 산

4)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 : “제1항 제2호의 사유(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정내역 등 덤핑률 재심사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및 국내산업의 범위

1. 재심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5)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⁶⁾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1호(2020.12.24.)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에 따르면, 재심사대상물품은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80호(2018.4.30.)⁷⁾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⁸⁾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또는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μ m⁹⁾ 이하인 것이며,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동 재심사대상물품의 세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는 HSK 3920.62.0000, 3920.69.0000이다.

재심사대상물품은 포장용(스낵포장지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5) 관세법 제60조제1항: “무역위원회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조사대상물품

3항: “무역위원회는 ……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6)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 2018-16호) 제2조 제2호: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60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 및 보조금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7)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18.4.30.]

8) 조사보고서 pp.8~9

9) 1마이크로미터(μ m, micron, micrometer)는 1mm의 1/1,000임

등), 광학용(LCD, BLU¹⁰소재 등), 그래픽용(잉크젯·레이저프린터소재) 등으로 사용되며, 재심사대상물품의 용도와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장강도¹¹), 신장률¹²), 흐림도¹³), 가열수축률¹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심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해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최종 소비자 또는 중간 유통상)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동종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¹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물리적 특성, 기능 및 용도,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측면에서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비교하여 국내 동종물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가. 물리적 특성

조사보고서¹⁶)에 의하면 요청인과 수입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은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주요 원재료인 TPA(Terephthalic Acid)와 EG(Ethylene Glycol)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0) BLU(Back-light Unit): LCD/LED와 같은 디스플레이의 패널 뒷면에서 광원의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는 구조물로서 프리즘, 렌즈, 확산 필름 등이 있다.

11) 인장강도: 표준시편을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겼을 때 절단되는 힘이다.

12) 신장률: 표준시편에 가해지는 인장력에 의해 늘어난 길이로, 초기 길이에 대한 백분율이다.

13) 흐림도: 기재를 통과한 빛이 산란된 정도, 탁도(濁度)라고도 한다.

14) 가열수축률: 연신된 필름이 일정한 높은 온도 하에서 방치되었을 때 수축되는 정도이다.

15) 조사보고서 pp.10~13

16) 조사보고서 p.10

원심17)에서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실은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인 특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품질 및 소비자평가

조사보고서18)에 의하면 품질 측면에서 요청인과 수입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은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요청인은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는 것으로 품질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수요자가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동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수입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은 해외 생산자의 생산 장비가 최신 장비로 일부 품목에서는 재심사대상물품의 품질이 우수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통대리점은 소비자평가 측면에서 국내생산품은 빠른 납기 대응, 불량 및 클레임 처리, 여신 제공 등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은 낮은 가격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 모두 고부가가치제품과 범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제품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생산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비교적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간단한 저가 범용 제품은 재심사대상물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19)에서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7)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8-1호(2018.1.18.)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서 및 홈페이지와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품 주요 사양을 검토한 결과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8) 조사보고서 pp.12~13

19)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8-1호(2018.1.18.)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서 차이가 없고 혼용 사용되고 있으므로...(이하 생략)

조사실은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이 품질과 소비자평가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두 제품이 혼용 또는 대체 사용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기타

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기능 및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도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국내 동종물품 관련 검토 종합

위원회는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은 재심사대상물품과 품명 및 정의, 물리적 특성, 기능 및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은 최종 수요자에 의하여 혼용 또는 대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원심²¹⁾에서도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은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생산품이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의 평균판매가격 차이는 원심²²⁾에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품구성 비중차이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재심에서도 동일한 이유가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20) 조사보고서 pp.11-12

21)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8-1호(2018.1.18.)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서 차이가 없고 혼용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인 것으로 판단한다.

22)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8-1호(2018.1.18.)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평균판매가격 차이는 주로 물품구성의 비중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내산업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재심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가 당해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가. 국내산업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

조사보고서²³⁾에 의하면, 요청인은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와 요청인이 제출한 재심사요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요청인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내산업의 6월전 재심사대상물품 수입 및 해외 공급자 등과 특수관계 여부

일부 국내생산자(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회사, 주식회사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식회사)가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국내생산량의 0.1% 미만으로 수입량이 미소하고 재심사대상물품의 해외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국내산업의 범위관련 검토 종합

위원회는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요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 생산량의 100%로 국내 총생산량의 전부를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23) 조사보고서 p.16

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산업의 합”으로 결정한다.

4.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3항에 따르면, 조사신청서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실은 이에 따라 비밀취급 요청 자료를 제출한 요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와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요청인, 피요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목록 등을 제출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이와 함께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요청인, 피요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요청 자료의 목록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비밀취급 여부 검토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24) 조사보고서 pp.19~21

Ⅲ.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위원회는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덤핑사실 여부, 수입물량의 변동, 재심사대상 공급국 및 공급자의 생산능력과 수출여력,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공급자별로 산출된 덤핑수준을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가. 조사경과

조사실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 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들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질의서를 발송(2020.12.29.)하였다.

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대만의 신콩은 조사참여신청서 제출 후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최초 답변기한인 2021.2.8.에서 2021.3.2.로 3주간 연장승인을 통보하였고, 연장된 기한 내에 접수된 답변서를 기초로 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태국의 에이제이피는 조사참여신청서 제출 후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최초 답변기한인 2021.2.8.에서 2021.3.2.로 3주간 연장승인을 통보하였고, 연장된 기한 내에 접수된 답변서를 기초로 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태국의 폴리플렉스는 조사참여신청서 제출 후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최초 답변기한인 2021.2.8.에서 2021.2.25.로 연장승인을 통보하였고, 연장된 기한 내에 접수된 답변서를 기초로 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UAE의 플렉스는 조사참여신청서 제출 후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최초 답변기한인 2021.2.8.에서 2021.3.15.로 5주간 연장승인을 통보하였고,

21) 조사보고서 pp.24-25

연장된 기한 내에 접수된 답변서를 기초로 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UAE의 제이비에프는 조사 불참을 통보(2021.1.19.)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실은 제이비에프에 대하여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협정 부속서II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서,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 생산자 답변서, 국제적인 전문조사기관의 자료 등 이용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확인하고 덤핑률을 산정하였다.²²⁾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7조에 의한 현지실사를 계획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따라 공급국의 입국통제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요청인들에 대하여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조사실은 피요청인들에 대한 답변서 검증을 위해 한국 수출판매 및 자국 내 수판매에 대해 샘플을 선정하여 계약서·신용장·상업송장·선하증권·매출분개장·은행거래내역 등 증빙 그리고 원가 산정내역 등의 추가자료, 원질의서 미답변 사항에 대한 재질의 등을 요구하였고, 피요청인들은 답변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덤핑사실 여부

1) 개별덤핑률 검토

조사보고서²³⁾에 의하면, 재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대만의 신콩에 대하여 5.49%, 태국의 에이제이피, 폴리플렉스에 대하여 각각 3.71%, 3.19%, UAE의 플렉스에 대하여 7.98%의 개별 덤핑률이 산정되어 덤핑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UAE의 제이비에프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지 못하였다.

22) 조사실은 반덤핑조사 질의서 송부시, 답변서를 미제출할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사전 통보하였다.

23) 조사보고서 p.26

<대만>

2) 신콩

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신콩이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민국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이하 "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상업적 사양, 두께, 표면처리, 출고형태의 총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신콩은 조사실이 제시한 CCN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신콩의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신콩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물량은 총 내수판매물량의 약 xxx%로 무시할 만한 수량으로 판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리베이트,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판매보증비, 포장비를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다. 덤핑가격은 실제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적용하였고 내륙·해상운임, 핸들링, 보험료,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커미션 및 포장비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콩이 대한민국 수출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수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5.49%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24) 조사보고서 pp.26~34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바와 같이 신콩의 덤핑률을 5.49%로 결정한다.

<태국>

3) 에이제이피

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에이제이피는 조사실의 질의서 및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실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가 불완전하여 수차례 보완을 요청하였다.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CCN 별 생산원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에이제이피의 제출답변서에는 모든 내수 및 수출제품의 생산원가가 동일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다르게 배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실은 추가로 보충질의(2021.6.30.) 하였으나, 에이제이피는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에이제이피는 CCN의 분류를 조사실이 송부한 물품범위안내서 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을 통해 답변작성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용도별 구분에 따른 물품 구분을 통해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실은 보충질의(2021.8.9.)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에이제이피는 변경된 CCN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실은 여타 피요청인의 CCN 분류가 조사실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 점과 비교할 때, 에이제이피의 CCN 구성이 객관적 근거에 따른 구분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검토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종료재심사 시 덤핑률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사실은 금번 재심사의 경우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신뢰성이 부족하여 합리적 재산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원심 이외에 달리 사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 시 산정된 덤핑률인 3.71%를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바와 같이 에이제이피의 덤핑률을 3.71%로 결정한다.

25) 조사보고서 pp.35~38

4) 폴리플렉스

조사보고서²⁶⁾에 의하면, 조사실은 폴리플렉스가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생산원가의 경우 폴리플렉스가 제품별 화학적 코팅의 차이에 따라 원가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 또는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실은 표면처리가 있는 품목들의 단위원가의 평균값으로 생산원가를 조정하였다. 또한, 폴리플렉스가 판매관리비 중 금융수익 관련 항목들이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충질의(2021.8.4.) 하였으나, 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실은 판매관리비 산정시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금융비용 일부를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상업적 사양, 두께, 표면처리, 출고형태의 총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폴리플렉스가 조사실이 제시한 CCN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폴리플렉스의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실시하고,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륙운반비, 보험료, 신용비용, 포장비를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다. 덤핑가격은 실제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적용하였고 내륙·해상운임, 핸들링,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 등을 조정요소로 공제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다.

과세가격은 폴리플렉스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26) 조사보고서 pp.39~55

나누어 3.19%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바와 같이 폴리플렉스의 덤핑률을 3.19%로 결정한다.

<UAE>

5) 플렉스

조사보고서²⁷⁾에 의하면, 플렉스는 조사실의 질의서 및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원심 조사대상기간 대비 물량이 현저하게 줄었으므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하여 플렉스는 원심의 높은 덤핑률로 인하여 한국 수출 시 중요 거래처를 상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사실이 플렉스가 제출한 답변서와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상당한 물량에 대하여 자료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플렉스 답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플렉스는 통관자료와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수입사측 관세사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종료재심사 시 덤핑률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사실은 금번 재심사의 경우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신뢰성이 부족하여 합리적 재산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원심 이외에 달리 사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시 산정된 덤핑률인 7.98%를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바와 같이 플렉스의 덤핑률을 7.98%로 결정한다.

27) 조사보고서 pp.56~60

6) 제이비에프

조사보고서²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이비에프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WTO반덤핑협정 제6.8조, 동협정 부속서Ⅱ,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원심 조사 당시 산정된 덤핑률을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원심 조사 시 제이비에프에 대해 60.95%의 덤핑률을 산정한 바 있으며, 이는 ①공급자가 직접 제출한 답변서에 기초해 산출된 점, ②공급국 현지 실사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친 점, ③조사대상공급자들의 덤핑률인 3.67~60.95%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서 WTO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Ⅱ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사실은 금번 답변서 미제출 공급자의 덤핑률은 원심 조사결과 산정된 덤핑률인 60.95%로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바와 같이 제이비에프의 덤핑률을 60.95%로 결정한다.

2. 수입물량의 변동

조사보고서²⁹⁾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덤핑방지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6.9% 증가하였으나,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2017년 1,000톤에서 덤핑방지관세³⁰⁾가 부과된 2018년 947톤과 2019년 901톤으로 감소하는 등 연평균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덤핑방지조치 이전에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덤핑방지조치 이후 감소한 것으로 보아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일부

28) 조사보고서 p.61

29) 조사보고서 p.62

30) 2017.11.1.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2018.4.30.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3.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조사보고서³¹⁾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요청인 질의서를 통해 피요청인에게 공급국 전체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출처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태국과 UAE의 피요청인은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별도의 회신이 없었고, 대만의 피요청인인 신콩은 신콩과 대만 내 다른 생산자인 난야의 생산능력을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합산하여 대만의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을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태국과 UAE의 피요청인이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하거나 별도의 회신이 없었고, 대만의 신콩이 제출한 자료가 대만 전체를 객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WTO반덤핑협정 부속서Ⅱ 제5조에 따라 피요청인 5개사가 자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부속서Ⅱ 제6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사실을 피요청인에게 통보 및 관보에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시 대만, 태국 및 UAE의 전체 생산량, 수요, 수요초과생산능력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현장에서 공개하였으나 피요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며, 공청회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수정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였으나 피요청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협정 부속서Ⅱ,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PCI Wood Mackenzie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PCI Wood Mackenzie 보고서가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에너지·화학 컨설팅 회사인 Wood Mackenzie社의 PCI 컨설팅 그룹 사업부문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PET산업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출처의 자료를 재심사대상물품을 포함한 PET 필름의 생산

31) 조사보고서 pp.63~65

능력, 수요량, 수요초과생산능력 등의 자료로 사용하는 등 WTO반덤핑협정 부속서Ⅱ 제7조에 따라 특별한 신증을 기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WTO 반덤핑협정 규정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2019년 생산능력은 1,000천톤, 수요량은 1,000천톤으로, 수요초과생산능력은 2019년 한국의 생산량과 유사한 수준인 1,000천톤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2024년 생산능력은 2019년 대비 7.9% 증가한 1,079천톤, 수요량은 8.7% 증가한 1,087천톤으로, 수요초과생산능력은 2024년 한국의 생산량과 유사한 1,075천톤으로 7.5% 증가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상당한 생산능력과 한국의 생산량과 유사한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수요초과생산능력 등은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라고 판단한다.

4.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조사보고서³²⁾에 의하면, 미국은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치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태국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덤핑방지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출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된다면, 이는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에게 한국시장으로의 덤핑수출을 재개할 유인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종합

위 사실을 종합하면, 우선 위원회는 재심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답변서를 제출한 대만의 신콩에 대하여 5.49%, 태국의 에이제이피, 폴리플렉스에 대

32) 조사보고서 p.67

하여 각각 3.71%, 3.19%, UAE의 플렉스에 대하여 7.98%의 덤핑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UAE의 제이비에프에 대해서는 원심 덤핑률 이외의 덤핑률을 산정하거나, 그 이후 덤핑률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어,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원심 덤핑률을 적용한 것인 바, 덤핑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은 덤핑방지조치 이전(2013~2017)에는 큰 폭으로 증가(연평균 26.9%)했다가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연평균 $\Delta 0.1\%$)을 유지하여, 덤핑방지조치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과 현재의 가동률, 초과생산능력(2019년 1,000천톤→2024년 1,075천톤, 7.5% 증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된다면 대만, 태국 및 UAE의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들이 한국 시장으로의 덤핑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조치 등으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출 판로가 제한되고 있어,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대한국 덤핑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덤핑사실 여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 물량변동,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 시장으로의 덤핑수입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종 판단한다.

IV.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와 관세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 덤핑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덤핑방지조치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과 함께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등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향후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1.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여부

가. 판단기준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르면,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는 원심에 관한 규정이며, 재심에 관한 누적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해당 WTO 반덤핑협정 제3.3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료재심의 경우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

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반덤핑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조 사실은 복수국산 재심사대상물품 수입의 효과 내지는 피해의 누적적 평가 여부 도 반덤핑조치 종료시 예상되는 재심사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 내 동종물품간의 경쟁조건을 검토하였으며, 현재의 경쟁조건은 미래의 경쟁조건 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사실은 종료재심에서의 누적적 평가는 원심과 달리 반덤핑조치로 인한 효과가 현재 국내시장에서의 재심사대상물품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관 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 및 반덤핑협정 제3.3조(a),(b)항 상의 덤핑물품 미 소물량 및 미소덤핑률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 사실이 검토한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여부에 대한 기준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경쟁조건 검토

조 사실은 우선 재심사대상물품간 그리고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의 현재 경쟁조건을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³³⁾에 의하면 복수국산 재심사대상물 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 자 평가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재심사대상물품간 그리고 재 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혼용 또는 대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심사대상물품간 그리고 재심사대상물품 과 국내 동종물품간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조 사실은 조사보고서³⁴⁾를 통해 재심사대상물품간 그리고 재심사대상물 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현재의 경쟁관계가 향후 비경쟁관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과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재심사대상 물품간 그리고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에도 재심사대상물품간 그리고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 물품간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33) 조사보고서 pp.71~72

34) 조사보고서 p.72

다. 결론

위원회는 국내 PET 필름 시장에서 재심사대상물품간 그리고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재심사대상물품간 그리고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금번 1차 재심에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만, 태국 및 UAE산 재심사대상물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복수국산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 효과 내지는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누적적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2.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가.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 및 동종물품 판매물량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³⁵⁾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덤핑방지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6.9% 증가하였으나,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2017년 1,000톤에서 덤핑방지관세³⁶⁾가 부과된 2018년 947톤과 2019년 901톤으로 감소하는 등 연평균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덤핑방지조치 이전에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덤핑방지조치 이후 감소한 것으로 보아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국내소비와 동종물품의 판매물량은 덤핑방지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연평균 1.9%, 1.2% 증가하였고,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는 2017년 1,000톤, 2019년 1,018톤, '20년 상반기 516톤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1% 증가하였고, 동종물품 판매물량은 2017년

35) 조사보고서 pp.73~74

36) 2017.11.1.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2018.4.30.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37) 조사보고서 pp.75~76

1,000톤에서 2019년 1,014톤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0.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판매와 덤핑방지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 판매물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과 덤핑방지조치가 국내 동종물품 판매물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했기 때문이며, 이는 PET 필름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라인의 중지가 어려워 판매가격이 적정 판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료비와 경비 등 변동비보다 높으면 생산하는 것이 생산하지 않는 것보다 손해가 적어 국내 동종물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나. 재심사대상물품 및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³⁸⁾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방지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0% 하락하였으나,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7년 10,000천원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2018년 11,666천원과 2019년 12,232천원으로 상승하는 등 연평균 6.5% 상승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2017년 10,000천원에서 2018년 10,306천원, 2019년 10,467천원으로 상승하는 등 연평균 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변화율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변화율보다 상승률은 높고 하락률은 낮으며,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차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상당히 낮은 판매가격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이 덤핑방지조치 이전에는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덤핑방지조치 이후 상승한 점,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변화율보다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변화율이 상승률은 높고 하락률은 낮으며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38) 조사보고서 pp.74~75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변화율이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의 변화율보다 상승률은 낮고 하락률은 높은 것으로 보아, 국내 동종물품 대비 재심사대상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 억제 내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치유 또는 지속되었는지 여부와 덤핑방지관세의 종료가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판매 및 재고, 생산량 및 가동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윤 등의 경영지표에 미친 덤핑방지조치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판매 및 재고

조사보고서³⁹⁾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2017년 1,000톤에서 2018년 995톤, 2020년 상반기 493톤으로 감소하는 등 연평균 0.4% 감소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17년 1,000톤에서 2019년 1,014톤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0.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4.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의 상당한 수입물량과 낮은 판매가격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2) 생산량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⁴⁰⁾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능력과

39) 조사보고서 p.78

생산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동률은 xxx%~xxx%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대상물품의 상당한 수입물량과 낮은 판매가격으로 인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생산량과 가동률이 정체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3)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조사보고서⁴¹⁾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18년에 16.9% 상승했으나 판매가격은 3.1% 상승하였고,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제조원가가 각각 3.7%, 11.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2019년에 1.6% 상승하고 2020년 상반기에 2.6% 하락하여 제조원가 하락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과 제조원가의 연평균 증감률이 각각 0.9%와 1.1%로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2018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제조원가 상승을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심사대상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으로 인해 제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상승 억제 내지 하락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4) 이윤

조사보고서⁴²⁾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17년 10,000백만원에서 2019년 12,778백만원, 2020년 상반기 8,737백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20.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방지조치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2020년 상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매출원가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동종업종 영업이익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40) 조사보고서 p.79

41) 조사보고서 pp.80~81

42) 조사보고서 p.82

(5) 소결

위원회는 위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효과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재심사대상물품의 상당한 수입물량과 낮은 판매가격으로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상승 억제 내지 하락하였고,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등은 정체된 것으로 판단한다.

라.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1)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수입물품

조사보고서⁴³⁾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 PET 필름의 수입물량은 2017년 1,000톤에서 2018년 1,061톤, 2019년 1,295톤, 2020년 상반기 877톤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2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 PET 필름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물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의 수입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⁴⁴⁾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 PET 필름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7년 10,000천원에서 2018년 11,416천원, 2019년 10,467천원톤으로 상승하는 등 연평균 1.9% 상승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낮으면서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보다는 높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 PET

43) 조사보고서 pp.88~89

44) 조사보고서 pp.89~90

필름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억제 내지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이 기타국 PET 필름의 판매가격보다 더 낮아 재심사대상물품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2) 국내소비 변화

조사보고서⁴⁵⁾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는 2017년 1,000톤에서 2020년 상반기 516톤으로 연평균 1.1%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며, 동종물품 판매물량과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도 각각 연평균 0.05% 증가, 0.1% 감소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국내소비, 동종물품 판매물량,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국내소비 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3) 수출실적

조사보고서⁴⁶⁾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수출량은 2017년 1,000톤에서 2018년 990톤, 2019년 950톤, 2020년 상반기 470톤으로 연평균 2.1% 감소하였으나, 총출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8%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내수판매와 수출 모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4) 주요 원자재의 가격

조사보고서⁴⁷⁾에 의하면, 2018년과 2020년 상반기에서 단위당 재료비와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변화추이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5) 조사보고서 p.90

46) 조사보고서 p.91

47) 조사보고서 p.92

조사실은 2018년 단위당 재료비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대상물품 대비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은 재심사대상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의 영향으로 재료비 상승분을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재심사대상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으로 인해 단위당 재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상승 억제 내지 하락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5) 소결

위원회는 위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수입물품의 판매가격과 주요 원자재의 가격 등이 국내산업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덤핑방지조치가 끼친 영향에 비해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마. 덤핑방지조치의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종합

위원회는 위 분석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의 판매가격 차이가 축소되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개선되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수입물품의 수입물량 및 판매가격, 국내소비 변화, 수출실적, 주요 원자재 가격 등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도 검토하였으나 이들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3.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조사보고서⁴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요청인 질의서를 통해 피요청인에게 공급국 전체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48) 조사보고서 pp.94~97

제출하고 출처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태국과 UAE의 피요청인은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별도의 회신이 없었고, 대만의 피요청인인 신콩은 신콩과 대만 내 다른 생산자인 난야의 생산능력을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합산하여 대만의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을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태국과 UAE의 피요청인이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하거나 별도의 회신이 없었고, 대만의 신콩이 제출한 자료가 대만 전체를 객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WTO반덤핑협정 부속서II 제5조에 따라 피요청인 5개사가 자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반덤핑협정 부속서II 제6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사실을 피요청인에게 통보 및 관보에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시 대만, 태국 및 UAE의 전체 생산량, 수요, 수요초과생산능력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현장에서 공개하였으나 피요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며, 공청회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수정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였으나 피요청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협정 부속서II,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PCI Wood Mackenzie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PCI Wood Mackenzie 보고서가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에너지·화학 컨설팅 회사인 Wood Mackenzie社의 PCI 컨설팅 그룹 사업부문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PET산업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출처의 자료를 재심사대상물품을 포함한 PET 필름의 생산능력, 수요량, 수요초과생산능력 등의 자료로 사용하는 등 WTO반덤핑협정 부속서II 제7조에 따라 특별한 신증을 기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WTO 반덤핑협정 규정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2019년 생산능력은 1,000천톤, 수요량은 1,000천톤으로, 수요초과생산능력은 2019년 한국의 생산량과 유사한 수준인 1,000천톤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2024년 생산능력은 2019년 대비

7.9% 증가한 1,079천톤, 수요량은 8.7% 증가한 1,087천톤으로, 수요초과생산능력은 2024년 한국의 생산량과 유사한 1,075천톤으로 7.5% 증가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상당한 생산능력과 한국의 생산량과 유사한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수요초과생산능력 등은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라고 판단한다.

나.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조사보고서⁴⁹⁾에 의하면, 미국은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치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태국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덤핑방지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출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된다면, 이는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에게 한국시장으로의 덤핑수출을 재개할 유인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조사보고서⁵⁰⁾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하더라도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보다 xxx천원에서 xxx천원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를 제외할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보다 xxx천원에서 xxx원 낮은 수준으로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가격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대상품의 판매가격은 덤

49) 조사보고서 p.97

50) 조사보고서 pp.98~99

평방지관세가 부과되었던 만큼 인하될 요인이 생겨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억제 내지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4.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위원회는 위 검토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덤핑방지조치로 영업 이익 및 영업이익률 등에서 국내산업이 개선되는 효과가 일부 있었고, 이러한 개선효과에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과 수요초과생산능력은 더욱 확대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출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있는 상황에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만큼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생겨 국내 동종물품과의 판매가격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고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억제 내지 하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원회는 덤핑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 덤핑률 수준

조사보고서⁵¹⁾에 의하면, 조사실은 재심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답변서를 제출한 대만의 신콩에 대하여 5.49%, 태국의 에이제이피, 폴리플렉스에 대하여 각각 3.71%, 3.19%, UAE의 플렉스에 대하여 7.98%의 덤핑률을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재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이비에프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협정 부속서Ⅱ,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원심조사 당시 산정된 60.95%를 최종덤핑률로 적용하였다.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3항에 따라 제65조를 준용하여, 대만 5.49%, 태국 3.68%, UAE 51.48%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실의 답변서 제출 공급자, 답변서 미제출 공급자,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사실이 산정한 바와 같이 대만의 신콩에 대하여 5.49%, 태국의 에이제이피 3.71%, 폴리플렉스 3.19%, UAE의 플렉스 7.98%, 제이비에프 60.95%의 덤핑률을 적용하고, 그밖의 공급자는 대만 5.49%, 태국 3.68%, UAE 51.48%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51) 조사보고서 p.101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이후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차이와 두 물품의 가격비율이 덤핑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 수준으로 복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일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차이가 더욱 커지고 두 물품의 가격비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국내 동종물품보다 낮은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할 경우,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덤핑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치유를 위해 덤핑방지조치 수준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덤핑률 재산정과 함께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도 재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건은 덤핑방지조치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일부 치유되었고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미래 국내산업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인 바, 현재 국내산업 피해수준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증가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수준은 원심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위원회는 원심의 산업피해구제 수준인 89.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3.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앞서 위원회는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3.19%~60.95%을 적용하고, 산업피해구제수준은 89.1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 건의 덤핑방지관세율은 WTO 반덤핑협정 제9.1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에 따른 최소부과원칙에 의거하여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 중 낮은 율인 덤핑률(3.19%~60.95%)을 최종 덤핑방지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대만의 신콩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49%
그 밖의 공급자: 5.49%
- 태국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1%
폴리플렉스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9%
그 밖의 공급자: 3.68%
- UAE의 플렉스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제이비에프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 덤핑률 수준과 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 공급국 | 피요청인(공급자) | 1차재심 덤핑율 | 산업피해 구제수준 | 최종 부과수준 |
|-----|---|-------------|--------------|------------|
| 대만 |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49% | 89.10% | 5.49% |
| | 그 밖의 공급자 | 5.49% | | 5.49% |
| 태국 |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71% | | 3.71% |
| |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Limited)와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9% | | 3.19% |
| | 그 밖의 공급자 | 3.68% | | 3.68% |
| UAE |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98% | | 7.98% |
| | 제이비에프(JBF RAK LC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0.95% | | 60.95% |
| | 그 밖의 공급자 | 51.48% | | 51.48% |

V.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관세법 제56조제2항 등 반덤핑 관련 국내의 규정에서는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EU·중국 및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가도 WTO 반덤핑협정과 동일하게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할 뿐만 아니라, 특히, PET 필름 산업은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과 후방산업인 정유,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잇는 핵심 공급망으로서, 대규모의 투자가 장기간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인 만큼, 국내산업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덤핑방지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잦은 재심 신청 및 조치로 국내 관련산업에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가중되고, 대외적으로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잦은 재심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남발하는 국가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부과하여 덤핑방지조치 효과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부과기간을 5년으로 하여도 산업환경 등이 변할 경우 상황변동재심⁵²⁾ 등을 통해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에서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방지관세율(3.19%~60.95%)

52)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

무역위원회 의결 제2020-5호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상황 변동재심 최종판정

에 대해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적용 범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8조
관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WTO 반덤핑협정 제11조

붙임자료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최종
보고서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1년 09월 16일

| | | |
|------|-----|---|
| 위원장 | 장승화 |  |
| 상임위원 | 나승식 |  |
| 위원 | 오수원 |  |
| 위원 | 김시중 |  |
| 위원 | 김대원 |  |
| 위원 | 강진구 |  |
| 위원 | 조영진 |  |
| 위원 | 이계영 |  |